

교정지에 실린

<외국의 행형제도 관련 자료 모음>

최신 세계 교정정책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서구 선진교정제도 분석(상) -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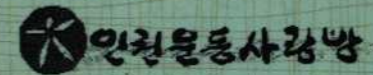
영국 행형법 소개(상- 하)

독일 바이에른 주의 교정제도

독일 헤센주의 교정제도(1-3)

대만 행형법

일본의 행형법 개정의 경과와 개정안의 내용(상)



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2005. 2. 1)

교정지에 실린

<외국의 행정제도 관련 자료 모음>

최신 세계 교정정책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서구 선진교정제도 분석(상) -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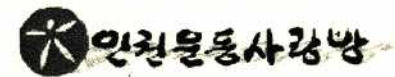
영국 행정법 소개(상~ 하)

독일 바이에른 주의 교정제도

독일 헤센주의 교정제도(1~3)

대만 행정법

일본의 행정법 개정의 경과와 개정안의 내용(상)



인천인권운동사랑방 감옥인권팀 (2005. 2. 1)

最新 世界 矯正政策 上에 나타난 問題點과 對策

大要

I. 世界矯正政策의 比較

1. 형벌의 임한 정도
2. 인권의 보호 정도
3. 교정의 목적과 형벌사상
- 4 기타

II. 世界 矯正의 문제點

- 1 과잉구금
- 2 과잉구금의 폐해
- 3 과잉구금 대책
- 4 수형자위 권리 확대

III. 矯正의 타율성

IV 向後展望



김용준/수원구치소 서무과장
교정감

1. 世界矯正政策의 比較

교정정책의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교정법규와 그 조직 및 운영의 기초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두세 시간의 견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공식적, 표면적인 것만 파악할 수 있을뿐 구체적 실태의 파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해볼 때 각국의 교정관계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교정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간 비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구미 여러나라의 교정법규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래 유럽제국 특히 자유주의 국가에 속하는 서구국가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형성하고 밀접한 교섭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이사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항상 諸國의 전문가를 소집해서 문제를 검토하고, 실시를 위해 보고서 또는 조약을 성립시키고 있다. 예로서 교정분야를 들면 1955년 UN이 결의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관해서도 유럽 이사회는 그것을 수정한 "수형자처우최저기준규칙"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1973년에 제정하였다. 그외에도 1982년에는 "수형자의 歸休에 관한 勸告"를 제정하여 각 회원국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였다. 한편 주요 국제적 준칙 가운데는 1987년의 유럽형사시설 규칙, 1988년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1990년 미결구금자에 관한 기본원칙 등이 있다.

1. 형벌의 엄한 정도

우선 숫자에 기초하여 구금형의 성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해 인구 10만명당 몇 명이 실형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6.1, 스웨덴 156.8, 네델란드 112.2, 프랑스 132.8, 영국 89.6, 서독 61.4로

되어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이 실형을 받는 자의 수가 가장 적고, 평화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에서 실형이 가장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두 가지 숫자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스웨덴 및 네델란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의 형이 부과되고, 스웨덴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일본의 6배나 되는 것이 된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은 실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구금율이 낮은 것은 단기형, 만기전 석방이 많은 점, 保釋 등의 이유가 그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여 네델란드의 형기 평균은 1개월 미만이고, 스웨덴이 3개월, 미국의 평균형기는 21개월이다. 더욱이 네델란드의 교도소에서는 방이 없는 경우 입소를 연기하고, 방이 비기를 기다렸다가 입소를 명한다. 이와 같이 빈방대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과잉구금에 골치를 썩힐 까닭이 없다. 실형을 받은 자는 집에서 대기하고 교도소로부터 호출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스페인 등은 수형자의 구금율은 64이지만 미결 수용자가 그의 1.5배나 되기 때문에 실제의 수용업무의 문제는 수형자의 구금율만으로는 추산할 수 없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구금율은 201이지만 낮은 곳은 북다코타주(52), 미네소타주(56) 등, 높은 곳은 DC(738), 네바다주(412), 루이지애나주(308) 등으로 되어있다. 동구제국의 그것은 추정치로서 폴란드 305, 러시아 350~660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인권의 보호 정도

이 내용을 알기란 대단히 어렵다.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미선진국의 대부분이 불복의 이의신청을 법률에 의해서 그 조직 또는 특별한 사법기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스웨덴은 잘 알려진 대로 음부즈만제도를 채택하여 그것에 일임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호주, 폴란

드 헝가리 등은 일종의 行刑法院의인 것의 소송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 法院제도에 있어서 受理條件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는 불복이의신청의 95% 이상은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적으로는 7~8종류의 불복이의신청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유럽 여러나라의 경우는 유럽인권회의(1950년)의 개척을 계기로 그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를 인정한 나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불복이의신청을 受理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의 40% 이상이 수형자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사법적 심사를 인정하지 않던지 또는 그 조건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 위원회의 결정이 직접 관계국에 명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矯正改善의 실마리가 되는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처럼 사법적 심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형자가 이 위원회에 제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위스로부터의 이의신청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설치된 후 최초의 15년 동안에 2000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채택된 것은 불과 4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효용의 정도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점차 채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시민 간에 국민병으로 까지 알려질 정도로 訴訟이 행하여지고 있는 나라로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시설수용자로부터의 州 및 연방 사법기관에의 제소가 인정되고 있는데 주로 헌법의 일반조항의 적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70% 이상의 矯正施設은 수형자가 유효하게 소송을 실행할 수 있도록 援助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며, 또 과반수 이상의 州에서는 「음브즈만」형식의 불복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3. 교정의 목적과 형벌사상

개선사상이 퇴색해 보이는 1980년대의 행형법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변화시킨 것일까? 不定刑期과 가석방(parole)의 조항을 폐지하고 「應報」모델로 형벌제도를 변화시킨 캘리포니아의 행형법은 이것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의 목적은 벌하는 것을 승인하고 선언한다」라고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교정시설이 위하 효과를 올리고 그리고 일반시민과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만족시킨다는 무언가 새로운 처우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다. 개선주의를 표방하는 행형법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라고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마련되지 않는한 시설내 처우가 급격히 변할 리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보모델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처우에 큰 변화가 생겨날 리는 없다. 예를 들어 수년 또는 수십년동안 수형자를 개선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라고 말을 들어온 직원이 지침 하나로 처우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처우의 개선효과에 의문을 갖고 제도의 개혁을 한 스웨덴의 1974년의 행형법중에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석방후의 준비를 위해 시설처우의 이용을 예정하고 있다. 또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도 附記하고 있다. 개선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스칸디나비아제국의 처우지침도 스웨덴의 경우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서구와 英美가 개선주의로부터 철퇴를 시작할 무렵 겨우 개선주의에 기초한 행형법을 성립시킨 독일의 행형법은 수형자가 再犯을 범하는 일없이 책임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재범으로부터 사회가 보호되도록 刑이 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附記하고 있다. 그 때문에 所内の 생활은 가능한 일반사회의 생활과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구 여러나라의 행형법은 예외 없이 수형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이한 면은 그 수단으로

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통해 책임감, 의무감, 자율심 등을 강화하는 것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기타

모든 나라에서 수형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의무를 이행시킬 것인가이다. 교도작업이 의무가 아니고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歐美諸國의 시설관리자는 모두 의무위반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을 수형자에게 찾아 주는 것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유럽제도 중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형자가 일반시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다.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고 그리고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우리 나라 교정의 향후과제로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1973년 법개정시 교정보호의 대상자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에까지 도달했다. 구미선진국은 모두 이 원칙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폴란드에서는 수형자의 임금 50%를 각출해 석방후 필요자금에 충당하는 기금으로 하고 있다.

II. 世界 矯正의 문제점

1. 과잉구금

개선효과가 없으며, 구금의 폐해 및 유지비의 高價 등의 이유란 측면에서 볼때, 교도소는 폐지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듯한 평가를 받아왔지만 현실은 어떨까?

현재 교도소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수의 수

형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狀態에 있다. 형사정책의 이론에서는 현재의 교도소의 과잉구금상태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중 하나로 되어있다. 현재 교도소는 과거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 현재(1998년)교도소는 약 50만 명이 연방 및 주립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고 그 밖에 약 15만 명이 구치소(jail)에 수용되어 있다. 이것은 10년전에 비해 정확하게 2배라는 숫자가 되어버렸다. 미국의 경우 1960년 후반부터 70년대의 초반에는 20만 명을 밑도는 수용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非刑罰化」또는「사회내 처우」에로의 전환이 시대의 潮流가 된 적도 있었지만, 1970년대 중기이후는 항상 전년을 상회하는 증가숫자를 나타내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1974년 이후 구금율도 끊이지 않고 상승하여, 인구의 절대수 증가 및 범죄수 발생수의 증가와 함께 수용인원도 계속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평균수용인원이 1975년 38,601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44,706명이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6년 6월에 정원 32,500명의 수용시설에 44,707명이 수용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6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는 수용능력 3만명에 대해서 4만명을 초과하는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1970년대 전반은 적은 수용인원으로 安定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증가경향이 보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경향이 한 단계 더 강하게 나타나 지난 10년동안 수용자가 배로 증가하여 6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미선진국의 과잉구금의 원인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증가, 특히 사회적 비난도가 높은 범죄(조직폭력범죄, 약물범죄 등)의 증가와 자유와 안전의 위협에 대한 「시민과 법집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미국의 개선모델로부터의 철회는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법규범의 개정을 불러 定期刑의 도입과

가석방(parole)을 폐지한 州도 나왔고, 刑期가 장기화되었으며 더욱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주 등에서는 무기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들 숫자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세부터 29세까지에 대한 實刑受刑率은 과거 50년간 거의 동일하다는 설도 있고 현재의 증가는 연령그룹의 절대수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20~29세 그룹의 인구가 인구분포도 상의 정상에 도달하는 1984년 이후는 점차로 감소경향을 띠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연령 그룹(층)의 인구동태와 구금 수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2000년 말경에는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제국의 과잉구금도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조직폭력 범죄증가, 약물범죄 증가와 함께 인종문제를 가미한 수용인원의 증가가 문제 시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및 스위스 등은 1950~60년대에 노동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노동이민을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인정했지만 이들 2세를 중심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각국의 사회문제화가 되고, 특히 교도소 인구 중 불균형하게 다수의 외국인이 수용되게 되었다.

2. 과잉구금의 폐해

수형자의 구금생활은 그 심신에 악영향을 가져다주며 과잉구금은 수형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정시설내에서 연간 100명을 넘는 살인에 의한 사망자가 있고, 살인 발생률은 외부(10.0)의 2배이상(24.8)이 되며 자살도 항상 연간 100명을 넘어 이것도 외부의 2배가 되고 있다. 결국 수형자는 단지 수용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2배의 사망률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교정시설내 주거를 위하여 공간과 예산을 빼앗기기 때문에 각종의 처우프로그램도 축소되는 운명

에 있다. 과잉구금을 둘러싼 개선파와 체제파와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일반범죄자 중에도 형의 장기화와 무기수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귀의 꿈이 사라진 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도수가 늘어난 것을 갖지 않는 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되고 있다면 그 막대한 비용 이해 타산은 넘은 수련의 번말이 될 것이다. 1970년 후반부터 구미의 주요국에 크고 작은 교도수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럽제국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북아일랜드 등에서 발생한 과격파의 행동이 교정시설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같은 시설의 교정직원은 애써 근무하고도 얻은 것만, 빈 빈난만 받고 있으며 수용인원과 직원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네델란드와 스웨덴은 수용자와 同數 내지는 그 이상의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및 독일은 1대 2정도의 비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선직원(감독자는 제외)과 수용자의 비율을 평균적으로 1:4.9이며, 과중한 근무를 하는 州는 콜로라도주(1:9.8), 미주리주(1:8.0), 네브라스카주(1:8.2), 오하이오주(1:8.2) 등이고 그 반대는 메사츄사츠주(1:2.6), 뉴멕시코주(1:2.8), 뉴욕주(1:2.8), 미네소타주(1:2.9) 등으로 되어있다. 영국의 통계를 보면 폭동이라 불리는 사고는 적다 치더라도 수용자가 지붕위를 올라간단든지, 직원을 인질로 잡는단지가, 수형자를 인질로 삼는 정도의 것들은 매년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한다든지, 벽을 폭파하기도 하는 과격한 도주의 발생이 보도된 적도 있다.

3. 과잉구금 대책

이론적으로라면 과잉구금대책은 지극히 간단하다. 즉, ①넣을 곳을 크게

한다 ②입구를 좁게 한다 ③출구를 넓힌다. 이 세 가지이다. 그러나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각각 難點을 갖고 있다. 첫째는 뛰니뛰니해도 예산의 문제다.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인 立法院은 다수의 범죄자를 장기로 수용할 입법을 즉각 성립시키지만, 矯導所의 수를 늘리는 예산확보는 잇기 쉽상이다. 교정예산의 우선권은 한없이 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또 교도소의 건축과 수용의 증가는 자동차와 도로의 관계와 아주 흡사하다. 도로를 정비해도 자동차의 보유율을 올려 이용율을 올리는 것에 공헌할 뿐으로 도로의 체증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수용정원을 늘려도 입구를 넓게하는가 출구를 좁히는가해서 과잉상태에는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자처우를 커다란 視點에서 보면 교도소를 늘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둘째로 교도소 송치를 줄이는 것은 범죄가 증가하는 속에서 법원의 태도가 미지근하다는 시민의 비난이 거센 경우에는 좀처럼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비난이 없는 시대에는 비용-편의 분석에 따라 값싼 사회내 처우로 정책을 변경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시대와는 다르다. 그래도 교도소 건축과 그 유지비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에서는 새로운 타입의 사회내 처우를 놓고 있다. 그 예로서 영국의 사회봉사명령(1972년)과 미국 조지아州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감시적보호관찰(1982년)이 있다. 조지아州의 경우는 관찰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1주간에 5회(제3단계에서는 2회)의 면접, 132시간의 강제적 사회봉사, 야간의출금지, 주1회의 경찰기록체크, 체포된 경우의 자동적 통지, 장기적인 알코올과 약물검사 등을 마련해 형벌적인 색채가 짙은 보호관찰을 신설하여 과잉구금에 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미 30개 주에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다른 10개 주에서도 法案을 제출하고 있다. 현재 벌금과 보호관찰(probation)이 형사처분인 것은 전세계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시민의

비난을 누그러 뜨리고 사회적 처우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징벌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로 출구를 넓히기 위한 방법도 그렇게 복잡한 것만도 아니다. 요컨대 수형자를 빨리 내보내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는 형기를 짧게 하는 것이다. 수형기간이 평균 3개월 이하인 스웨덴에 과잉구금은 없고, 그 기간이 평균 30개월 전후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과잉구금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앞서서도 기술했듯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무기형 및 장기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은 2,000명을 넘고 있으며 (5%), 미국의 주교도소(1년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서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비율이 유난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無期만 10%(5,500명)을 넘고 있고, 南部諸州에서는 무기, 장기형의 비율이 전 수용자의 20%를 넘고 있고, 알라바마주는 44.5%에 달하고 있다. 법원이 이 같은 量刑을 거듭하고 있는 한 그 나라에서 과잉구금이 해결될 실마리를 잡기란 힘들다. 더욱이 석방후의 제도를 폐지한 주에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수용자가 증가할 것이다. 그 때문에 미시간주(1980)를 필두로 해 많은 주가 知事權限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과도의 과잉구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형기 종료를 앞당겨 석방을 인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밀려오는 이 여파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의 善時制度에 추가적으로 작업특별 善時制度를 긴급 도입해 형기의 절반이하의 시점에서 석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自由刑의 형기는 범죄의 중대성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혼련,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양자의 혼합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가석방을 허용해 왔으며,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1/3로 인정되지만 그것은 유럽제국의 그것에 비교하면 매우 단기간이 된다. 유럽의 다수국가는 형기의 2/3 또는 형기의 3/4이 경

과할 때 가석방을 인정하는 곳이 많다(영국의 경우 1/3). 한편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과잉구금대책에는 형의 輕減에 의한 것이 종종 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후 20수회에 이른다고 한다. 또 다른 과잉구금 대책으로서는 형사재판의 촉진이 있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재판관에 대해서 교도소가 곤란을 겪고 있으니 심리를 서두르라고 주문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형사재판기간이 평균 3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판사의 여름휴가는 2개월을 깨는 일이 없다고 한다. 다른 주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 수형자의 권리 확대

일반시민이 향유하는 권리를 송두리째 수형자에게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의 권리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형자 권리의 성격을 ①시민적 권리 ②정치적 권리 ③사회적 권리로 분류해서 차례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권리란 심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신앙의 자유, 재산의 保持 및 처분의 자유 등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親權, 재산관리권, 처분권 등을 제한당하고 법정 후견인의 보호하에 놓이게 된다. 그 반대로서는 스웨덴 및 덴마크 등의 北歐諸國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1973년이래 정부의 정책으로서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스웨덴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결성(사실상 1966년에 출현)을 인정해, 시설의 생활조건, 勞賃의 금액, 행정방침 등에 대해서 矯政局과 교섭해 결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도 동일하다. 그 후 당국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치 않고 유럽제국 및 미국에서는 囚人組合이 차례로 만들어져 교정행정의 표면에 돌출하게 되었다. 정치적 권리의 문제로는 수형

자에게 참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1968년에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형자는 참정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느 특정의 범죄자 그룹에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호주처럼 투표가 의무화 되어있는(위반에는 벌금) 곳에서도 1년 이상의 科刑가능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는 知事の 保釋이 없는 한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적 권리로서는 실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무재해보험 등의 복지정책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다. 즉, 일반적인 사회 복지정책이 교도소 벽속까지 뚫쳐있느냐이다. 英美에서는 일반교육제도도 벽속까지 전달되어 국비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사업, 심리요법, 작업지도 등도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노무재해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연금보장이나 장해연금은 통상 인정받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의 경우는 연금과 실업보험의 적용을 대부분 정지하고 있다.

수형자의 권리 확대에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복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으로서 ①교정기관 내부 ②교정기관외부의 행정청 ③사법기관이 있지만 미국의 수형자의 경우는 ①②③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호주, 폴란드, 헝가리에서는 행정법원을 이용하고, 영국 및 독일에서는 사법기관에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北歐諸國에서는 ①과 ②가 이용되고 있지만 주로 ②의 옴부즈만을 이용한다는데 큰 특색이 있다.

사형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개인의 존재에 무게를 둔 나라로서 北歐諸國 및 북미이다.

Ⅲ. 교정의 타율성

개선모델로부터의 철폐가 사법제도에 가져다 준 구체적인 움직임은 각종 부정기적인 구금제도를 폐지 또는 변경한 것이다. 청소년누범자, 누범자, 정신질병자 등에 대한 부정기형은 그 효과가 의문시 되어왔으며 법률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인권보호의 견지로부터 개정이 행하여졌다. 부정기형이 도입되어 평가받고 폐지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보여진 것일까? 영국은 통상의 구금형에 추가해 상습누범자에 대한 특별제도로써 예방구금 및 교정훈련의 제도를 두었지만 所內처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특별한 형벌제도를 마련해도 실제의 처우 내용은 결국 다른 제도와 동일하게 되고 그 효과에도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즉, 보스탈운영 정도로 다른 것과의 차이를 마련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스탈도 1982년에 폐지되었다. 北歐도 그 효과와 인권의 고려로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부정기적인 제도가 철폐하고 있다. 미국의 수십주도 1970년대 후반에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움직임 속에서도 실제 교정의 처우방침에는 변경이 없었으며, 선진제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한 몫을 하도록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保持하고 있다. 應報모델에 복귀는 형벌의 징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1980년대 후반 스웨덴의 所內처우는 그 전후를 통해서 아무런 변경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으로 생활의 내용이 가장 시민생활에 가까운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 당국자는 자유형의 목적을 罰이라 이해하고 있지만, 罰의 내용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으로 그것 이외의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을 개선이 아니라 罰이라고 이해하는 西歐가 가장 인도적인 처우를 하고, 형벌의

목적은 수형자의 개선이라 이해하는 동구제국과 구미 주요국의 대부분이 그 처우에 있어서 복구에 뒤떨어져 보이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이같은 것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형벌의 목적논의 등은 형사시설의 실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같은 논의가 실무에 영향을 끼치는데는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교정은 형벌의 목적논의, 처우모델론의 승패와 관계없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교정은 본디 사립학교처럼 특정의 목적과 독특한 수단을 마련해서 독특한 교풍을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송치되어 오는 수형자의 타입에 맞는 처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되며, 스스로 독특한 철학을 기초로 하여 관리하고, 그것에 부적합한 자는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원을 초과했다해서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전 세계에서 네델란드 뿐이다. 여기서는 과잉구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빈방」대기 확정자는 자택에서 대기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어느 주에서 이것을 실시하자고 했다가 입법부와 법원 관계자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다(1979~1980년). 영국의 소년에 대한 단기수용처분에 대해서는 「빈방」대기가 행하여지고 있다.

다음에 수용자의 생활을 어떤 내용으로 할까에 대한 문제도 형법과 행형법의 표현, 학자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순수히 예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예산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하면 시민생활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시민에게 수형자의 생활은 시민이하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시민의 평균적 생활수준이 수형자의 생활수준을 정하는 것이 된다. 당연히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의 수형자의 생활은 수준이 높고, 그것이 낮은 나라의 所內생활수준은 낮게 된다. 스웨덴의 소내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은 스웨덴 교정의 운영방침이 「개선」이거나 혹은 「형벌」

이기 때문과 같은 것이 아니고, 더욱 단순하게 스웨덴의 시민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에 연유한다. 또 인권무시의 나라에서 아무리 진보적인 형사학자와 교정실무가가 있어도 수형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운영은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생활을 중시하는 나라에 있어서만 수형자의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만큼은 법률의 규정이 중대한 요소일 것으로도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처우의 형태를 생각해 보자. 평균 형기가 1개월인 네델란드 및 3개월인 스웨덴에서는 누가 처우를 담당해도 폐쇄처우는 안된다. 보다 저렴하고 구금폐해가 보다 적은 개방처우가 당연한 것이다. 그것에 60% 이상의 사람들이 3개월 이하라면 분류업무 등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또 영국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개방시설의 폐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수형자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양형에 시민의 엄벌 요구가 가미되고 형기가 장기화하면 개방처우가 점점 어렵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다 그런 도주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거세질 경우 당연히 개방처우는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스웨덴,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독일도 1970년대 이후 단기형이 감소하고 장기형이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상태에서는 개방처우가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형이 많기 때문에 개방처우가 진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안될지도 모른다. 어떠한 장기의 수형자라 해도 약 6개월이내로 교도소를 나오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현재에도 앞으로 수개월 내에 출소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항상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현실의 형사정책이 연동한다는 것에는 미국과 영국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모든 범죄자 처우분야에서의 개혁에 앞서 보고서가 작성되며 이에 기인해 실시되고 있다. 그 판정에 근거해서 개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국의 범죄자처우의 역사는 시행착오의 역사다. 미국의 경우도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양국의 정책은 프라고마티즘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받

고 있으며 「하면 된다」는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토양에서 성립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졸속적인 실패도 많았다. 그 예외가 보스탈의 폐지이다. 폐지를 구하는 勸告가 나온 것이 1974년이지만 실제로 폐지된 것은 1982년이었다. 독일의 경우는 이론(가설)에 입각한 도그마티즘과 문제해결에의 완전주의가 무너져 처우방법의 개혁이란 면에서 볼 때 별도움이 될만한 것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또 歐美의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흥미있는 특징의 하나로 정책의 변경과 재판관의 대응 자세이다. 특히 부정기형적인 처분을 두고서도 이것을 이용하는 자세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英美 및 北歐의 부정기형의 이용정도의 추이를 보아도 분명하다. 책임주의에 의한 형법학의 교육을 받고 그같은 판결정책에 익숙한 사람들에 있어서 保安處分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처우의 실태와 함께 많은 법관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또 시설처우를 피해 사회내처우로 해야만 한다는 정책의 변경을 입법화해도 법원의 처분이 느슨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사회에서는 그같은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또 歐美에 있어서 재판관의 입지는 유난히 높고 스스로의 식견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이 같은 사람들은 지도받는 듯한 형태로 일에 대한 간섭에는 좀처럼 응하지 않는 버릇이 있다.

이와같이 교정의 처우내용은 대부분이 타율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어떤 기본이념을 갖지 않아도 된다든지,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타율성이라면 재판정책도 검찰업무도 경찰업무도 모두 마찬가지다. 법률에 의한 규칙적 제약 외에 시대와 사회의 일반정세가 그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든 직장에 공통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교정의 특질로서 타율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타율성에는 이같은 특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IV. 向後展望

개선주의자는 개선의 꿈을 부정기형과 가석방(parole)의 조합에 맡긴 것이지만, 현재 재범율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기형은 모습을 서서히 감추고 있다. 범죄자처우의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범죄자를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다는 수형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 같다. 실현될 것 같지도 않은 꿈을 실현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적은 害惡으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UN이 이제부터 大局的입장에서 범죄자 대책을 생각할 경우, 범죄자 처우에 의한 범죄의 감소라는 꿈이 퇴색되는 것 같다. UN은 범죄를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이것에 대체하는 것에 의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발상의 조잡함을 깨달은 것 같다. 범죄를 범죄자 자신의 「마음」의 문제로 보는 사고방식에서는 완벽한 범죄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 범죄가 범죄자 자신의 「마음」의 문제인 이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 의미에서 大局的입장으로부터 범죄문제를 생각하는 UN회의는 범죄자의 처우보다도 범죄현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항에 토의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정치적 권력의 濫用, 경제정책의 부적절, 사회정책 복지정책의 부족, 형사사법 각 기관의 운용의 문제점,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범죄의 실태파악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UN회의의 의제는 범죄 원인의 사회적 요소로 지목 받는 것에 UN회의의 의제는 집중할 것이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에는 문제가 없거나 적다라는 것이 종래의 주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대책의 초점은 범죄자의 처우 즉 개선을 통한 범죄감소라는 것이 될 것이다. 여전히 나쁜 것은 범죄자뿐이고, 반성해야 하는 것도 범죄자뿐인 것이다. 즉 사상개선의 일환으로서 교도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처우의 비중이 저하된다면 우리들은 범죄자 처우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만약 지금까지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을 그만 두고 구금위주의 집행을 방치해도, 결과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면, 보다 강제적인 그리고 보다 완전한 격리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정말 바람직한 것일까? 시대에 걸맞게 형벌의 목적은 개선으로부터 응보 및 위협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 하고, 시설내의 처우는 피해자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일반시민을 성나게 하고 當수형자를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러나 「응보」모델론자 중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은 전무하다.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형벌의 내용은 비인도적인 것 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개선모델로 개선하는 기술이 불확실한 것인데 수형자를 부정기형으로 구금하는 것이야말로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형벌의 목적에 주장의 차이는 있어도 형벌의 집행이 인도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歐美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공통의 인식이다. 이 인식이 앞으로의 교정의 지도이념의 최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 형벌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교정의 현장에서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념이고 본질적으로 回顧的 이념이다. 그리고 교정의 현장에서 필요한 이념은 수형자가 받은 형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념이 아니라, 형벌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망적인(미래지향적) 것이다. 이같은 의미로 구미제국의 시설내 처우의 목적을 볼때, 공산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불문하고 시설내 처우가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을 증진시키는 형태로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외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형벌의 목적을 개선으로 할까 응보로 생각할 것인가의 사상이나, 제도를 떠나서 사회복귀를 커다란 처우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많다. 즉 UN 기준규칙 제65조의 처우의 기본방침과 同 취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평균적 처우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교도소의 실정에 대해서는 시민이 범죄의 증가가 괴로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英國, 美國,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所内の 생활이 인도적인가 아닌가 보다는 징벌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미국처럼 수형자의 증가에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형생활에 대한 사법 판단에서는 교도소 생활이 헌법위반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여 그 시정 명령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어떤 나라든 하나의 이념으로 교정처우가 일률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념이 공존하면서 현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수형자는 사회에 대한 경고로서의 역할을 다함에 충분하고, 따라서 검거된 자에 대한 현실의 부담은 가볍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以上에서 볼 수 있듯이 교정에 있어서 범죄자 처우의 지도이념이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어떤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도소의 제반 기능(응보기능, 격리기능, 개선기능, 위하기능)의 균형 위에 성립하는 것이고 시대와 장소에 의해서 그 색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정시설의 사법적, 사회적 역할의 이해에 변화가 있다해도 그 경우 각각의 지도이념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지도이념 중에서 각각의 비중이 변화할 뿐인 것이다. 변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그 비중이고, 그 배합이다. 형벌과 범죄자 처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의 지도이념은, 모두 어느 시대라도 늘 우리들의 가슴속에 계속해 존재할 것이며, 다만 우리들은 때때로 그 組合을 바꿀 뿐이다. 구금 처우의 목적은 「석방후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고 역설한 1840년 마코노키의 「組合」은 현재에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

는 지도이념이 아닐까? 영국에서 보스탈을 대신해서 등장한 「청소년 구금」의 시설내 처우의 지도이념은 여전히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규칙3조) 구금된 자가 언젠가는 사회에 되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설내 처우의 주요목적이 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矯正資料 ✽

교정 253
(1999.5)

歐美 先進矯正制度 紹介(上)

-캐나다·미국·독일·스웨덴·프랑스를 중심으로-

金 和 洙
(法務部 保安第2課長)

〈目 次〉

- | | |
|-------------------------|---------------|
| I. 視察者 | V. 概 觀 |
| II. 視察對象國 | VI. 視察國別 施設紹介 |
| III. 視察期間 | VII. 맺는말 |
| IV. 視察目的 및 視察內容
作成方法 | |

編輯者 註) 본 자료는 교정공무원들이 선진교정제도 및 교정시설을 시찰, 우리나라와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등을 비교·연구하여 교정시설 조성계획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시찰자들의 시찰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함.

I. 視察者

성명	직급	소속
김화수	교정감	법무부 보안제2과
김용준	교정관	법무부 교정과
김종태	건축주사	법무부 관리과

I. 視察對象國 :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II. 視察期間 : '97. 3. 11 ~ 3. 24(14일)

IV. 視察目的 및 視察內容作成 方法

1. 시찰목적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들을 시찰하여 시설규모·구조 및 장비 이용상태 등과 수용자 처우등 교정시설 조성계획 수립등 교정행정의 발전과 그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시찰내용 작성 방법

시찰내용의 작성은 방문국 순서대로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에 대한 일반적인 교정제도와 수용자 처우 등에 대하여 기술함.

V. 概 觀

1. 기본원칙

-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자유형의 집행도 오직 자유의 박탈에 그치고, 교정시설내에서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됨.
-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처우면에서 인간적품위와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2. 독거수용 및 임금

- 작업에 취업하는 재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각 거실에는 침대, 책상걸상, 수세식 변기와 세면대, 옷장, 거울, 인터컴 등의 기본적 생활용품이 지급되고 있음.

3. 외부와의 교통

- 접견은 원칙적으로 칸막이가 없는 방에서 입회자 없이 실시되고, 특히 스웨덴의 경우 비록 중구금(重拘禁)교도소라고 하여도 침대 및 간편한 생활용품이 갖추어진 방에서 2시간 동안 허가함으로써 부부간의 성관계까지도 가능함.
- 외부와의 전화는 휴게실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됨.

4. 흡 연

모든 국가에서 기·미결을 막론하고 본인 부담으로 흡연이 허용되며, 흡연장소는 거실, 복도, 휴게실, 운동장 등 실내외에서 모두 가능하나 음주는 금지됨.

5. 계 호

- 계호는 침단시설이나 장비에 의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은 주로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운영과 교정처우에 임하고 있음.
- 식당운영, 청소 등 전문분야에는 전문직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식당운영, 청소, 세탁, 의료, 보건, 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함.

VI. 視察國別 施設紹介

1. 캐나다

가. 온타리오주 법무부 교정시설 기획팀

- 방문일시 : 1997. 3. 12. 10:00
- 대 담 자 : 온타리오주 법무부 교정시설 총괄책임자 (국장) : 쿠르트 젠센(Kurt JenSen) 및 건설책임자
· 온타리오주 법무부 교정시설 기획팀장(민간인) : M.H GOLDMAN

· 개 요

- 캐나다 법무부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캐나다도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운

교정시설의 조성 및 건설을 위하여 법무부 시설과 직원과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온타리오 주정부 신설 교도소 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팀에서는 새로운 교정시설의 신축 및 개축해야 할 45개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의 입안이 끝났는데 이 16개 시설중 2개시설은 정원이 1,200명이고, 대부분의 시설은 평균 수용정원이 700명으로 되어 있음 (수용정원이 700여명이지만 1,000명이상까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최대 가능수용인원은 1,700명이 됨)
- 연간 45개 교정시설 운영비용은 34억\$(이하 캐나다 달러)인데 매년 1억달러씩 절감계획을 세우고 45개시설중 16개 시설을 새로운 시설계획에 의해 개선하여 운영한 결과 1단계로 2억5천만불의 절감 효과를 가져옴.
- 이러한 교정비용의 절감효과는 5,800명 직원중 2,000명을 감원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중앙통제실에서 출입문을 開閉하고 수용동의 배치를 계호에 편리하게 하는 등의 시설개선의 결과임.
- 이러한 시설개선의 대표적인 예가 맵플(Maplehurst) 교도소인데 이를 참고하기 위해 도면과 배치도를 받아들임.

나. 토론토 서부구치소(Metropolitan Toronto West Detention)

- 방문일시 : 1997. 3. 12. 12:30
- 대 담 자 : 소장 필립슨(R. D. Phillipson)

(1) 일반행정사항

○ 개 요

서부구치소는 토론토시 서쪽 약 3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에 신축된 구치소로 정문은 전혀 교도소와 같은 외형이 아니어서 일반행정 관청과 다름이 없었으며, 계호는 중앙통제실과 관구별 관구통제실에 모니터를 설치, 직원 및 수용자의 일거일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건장치는 마스터키를 주·야 구분하여 사용하고 주변은 주벽화된 건물과 철망(펜스) 울타리로 되어 있음.

○ 수용자 수용인원 및 직원 정원

- 수용인원 : 700명
- 직 원 : 424명의(여자직원 포함)

○ 수용상의 특징

1977년에 개칭된 중구급(maximum)형의 시설로 18세 이상 남녀 미결수용자와 16~18세의 소년범을 수용하는데 수용동은 상·하층으로 되어 있고 침대를 사용하며 외국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함.

○ 입소절차

입소절차는 조사 → 검신 → 사진촬영 → 수용자 준수 사항 교육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직원복장

직원중 간부는 사복을 입고 비간부는 정복을 입었으며 사복에는 명찰을 달고 있음.

○ 운동과 교담

사동 곳곳에 잔디를 입힌 소형운동장에서 오전·오후 한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사방 중간중간에 수용자 상호간에 교담할 수 있는 교담장소가 마련되어 있음.

○ 접 견

접견실에 2명의 안내직원이 근무하는데 칸막이 없는 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접견하며 계호는 비디오에 의해 감시하고 모든문이 자동장치에 의해 작동됨.

○ 전화 사용 및 흡연 여부

흡연은 허용하고 전화는 부모형제등 허가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컴퓨터에 입력, 여기에 입력된 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 전화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함.

○ 의무과 진료사항

마약중독, 알콜중독, 성병감염자, 산부인과 치료를 위한 특별치료 과목을 개설한 것 외에도 시설내에서 거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는 외부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시설사항

○ 전 경

- 외형 : 시설 주변에 도로 및 건물에 인접해 있어 교정시설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음.

- 건물 : 적벽돌로 된 2층 건물로서 일반사무실과 같은 느낌.
-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고 조경 등 주변도로와 조화가 잘됨.
- 건물배치 : 사동형태가 변형된 +자 형태로 건물을 주변화하여 건축
- 주 벽
 - 외부 경계펜스로 구획(2중) 설정되어 있음.
 - 동 별로 주벽을 건물화하여 외부에서 일체 거부감이 없고 내부에 각동별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음
 - 수용실 내부에서 외부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관망됨.
 - 보안시설
 - 무인카메라(CCTV)가 건물과 펜스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중앙통제실에서 자동 감시되며, 울타리에 감시 센서가 있어 접촉시 자동으로 작동되어 라이트가 접촉지점을 집중적으로 비추게 됨.
- 정 문
 - 구외 별도 청사동 없음
 - 청사동과 수용동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구내진입시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출입자 확인후 입·출입 통제함
 - 구내 진입 출입문 2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쪽문이 닫혀야 반대쪽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음.
- 수용동
 - 시건장치
 - 자동, 수동겸용

- 중앙통제실에서 CCTV로 확인하여 각 출입문의 자동개폐 가능
- 교도관의 무선호출에 의하여 중앙통제실에서 CCTV 확인후 개폐
- 직원이 소지한 키로도 개폐가능(수동)
- 출입문 시건장치는 출입문에 돌출되지 않은(매입형) 형태로 설치됨.
- 출입문
 - 격자형 문과 철판문 동시사용
 - 견고한 수동키박스 설치
 - 별도 배식구 없고 구역별 공동급식
 - 기결수용자는 배식구 설치후 개별급식
- 거실 냉·난방
 - 복도 및 사방앞 공동구역에 공조덕트를 설치하여 급기 디퓨저로 난방가동(방열기 없음)
 - 침대사용
- 창 문
 - 2.5cm 강화유리 내·외부에 알미늄카바를 설치하고 알미늄카바안에 철근으로 보강.
 - 알미늄카바를 설치한 것은 톱질 등 도주행위시 사전 발견에 용이하고 미관상 거부감이 없기 때문임.
 - 세로형으로 된 알미늄카바의 간격이 12cm로 유리가 파손되어도 도주는 불가능함.
- 화장실
 - 별도 칸막이시설 없고

- 세면기, 대변기 스텐레스 일체형으로 설치
- 거울은 깨지지 않는 프라스틱 계통 반사판 설치
- 공동휴게실
 - 수용사동내 공동구역에 TV 및 공중전화, 식탁 등 설치 활용
- 여사동
 - 산모실 비데없음.
 - 일반수용동과 동일함.
- 병사동 : 병사 수용실은 일반수용동과 동일하나 일반수용동과 차단구획됨.
- 접견실
 - 일반접견실
 - 투명 아크릴 칸막이로 차단하고 수화기로 대화
 - 공동접견장에서 많은 수용자가 동시에 접견을 하며 직원 1명이 칸막이로 구획된 담당실에서 전체접견 감시
 - 접견내용 기록안됨.
 - 특별접견
 - 죄질이 가벼운 수용자들에게 접견시 신체 등 접촉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없음(접견전 검색대 거침)
 - 모든 통제는 인터폰으로 함.
- 기 타
 - 전체 중앙공급 냉·난방 공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수용실은 난방과 환기설비가 되어 있음.
 - 수용자 실내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음.

- 내부 천정 및 벽체 콘크리트는 제물치장마감(미장이 안된 상태)으로 되어 있음.
- 바닥은 무기질계통타일 마감
- 정문 출입구에 중앙통제실에서 각 부분에 설치된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보안, 외부침입, 도주 등 수용자 이동관리도 동시에 하고 있음.

2. 미 국

가. 방문기관 : 그린교도소(Greene Correction Facility)

뉴욕, 알바니 소재

○ 방문일시 : 1997. 3. 14. 11:30

○ 대 담 자 : 아더 네오나르도(ARTHUR A, LEONARDO) 소장등 간부

(1) 일반행정사항

○ 개 요

그린(Greene)교도소는 뉴욕의 수도 알바니주 그린(Greene) 콕사키(Cox Sackie)촌에 위치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중(中)경비시설로 현재 수용인원은 1,625명으로 그중 백인이 653명, 흑인이 905명, 기타가 62명이 수용되었으며 (이중에는 한국인 7명도 있음), 1984년에 신축되어 1991년에 증축됨.

○ 작 업

교도작업은 젓소를 양육, 우유를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된 우유는 전국교정시설은 물론 일반사회인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음.

○ 직업훈련

도안, 냉·난방시설 기술, 원예, 라디오와 TV조립, 빌딩보수, 석공, 엔진수리, 상업미술, 전기기술과목을 수형자 학력수준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 수용인원 및 직원

- 수용인원 : 수용정원 500명에 현재원 1,621명
- 직 원 : 700명(교도관 410명, 처우직원 290명)

○ 직원 근무

보안과 계호직원은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소장 밑에 부소장 3명을 두었는데 제1부소장, 보안부소장, 교화담당 부소장 등을 두고 있는 것이 특이함.

○ 주 벽

콘크리트 주벽은 없고 전자 감지장치된 2중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밖에는 CCTV감지장치를 해 도주 사고를 예방함.

○ 직원 보수

직원보수는 연봉으로 27,000달러인데 주변의 물가가 싸서 생활상 어려움은 없음.

○ 직원 명찰

미국의 직원중 간부는 명찰이 크고 비간부는 명찰이 작으며 계급장은 패용하지 않고 이름표만 패용함.

○ 운 동

운동은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하루에 2회 총 2시간 허가함.

○ 거실수용

- 수용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용인원이 많아 현재는 2인 수용이 많으며 독거실은 침대하나를 놓아 수용하되 2인수용시는 침대를 상하로 배열함. 거실에는 라디오나 책 등을 자비로 구입하거나 입소시 휴대한 것을 청취·열독함.

- 혼거실에는 1개방에 60명씩 수용함.

○ 접 건

접견은 자유롭게 공동접견실에서 계호직원 없이 할 수 있으나 중범죄 거실은 직원감시하에 실시함.

○ 사 동

거실의 주·야간 시건장치가 다른데 주간에는 열고 닫는데 쉽도록 하고 야간에는 어렵도록 되었음.

○ 간 식

중식외에 야간에는 간식을 주는 것이 특이했음.

(2) 시설사항

○ 전 경

- 단층 적벽돌로 박공지붕 형태임
- 펜스주변에 민간인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고 외부에서 볼때 교정시설이라는 느낌이 없음.

○ 주 벽

- 외부 경계펜스로 구획(2중) 설정되어 있음.
- 콘크리트 주벽은 없고 경계펜스 주위에 외부는 CCTV 카메라로 내부는 전자감응장치로 이중감시 형태임
- 운동장 및 수용실에서 외부관망 가능

○ 건물배치 : 병렬형으로 부지형태에 맞추어 단층으로

배치

○ 정 문

- 외부인의 구내 출입시 정문에서 소지품을 모두 회수하고 손 등에 형광스탬프를 찍어 통과개소에 설치된 형광램프에 비춰 확인후 출입 가능

○ 수용동 내부

- 공동수용형태이고 공동구역에서 TV시청 및 흡연(흡연실과 비흡연실)실 분리
- 공동욕실, 화장실,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음.
- 음수기, 제빙기, 전자렌지 설치
- 출입문 시건장치는 매입형으로 견고함.

○ 수용거실 출입문

- 철재 철판문 설치 견고한 수동키박스 설치
- 수용자 이동은 자유로우나 자기목적지에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
- 불시에 수용자 이동을 점검하여 이동위치나 시간을 위반할때는 엄격히 제재함.

○ 수용실 냉·난방 시설

- 수용동은 난방시설(공조덕트)도 있고 중앙기계실에서 각 사동에 공급
- 냉방시설은 없음. 환기장치로 조정

○ 수용실 창문

- 창문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며 알미늄 후렴(빗살형)으로 견고히 설치되어 있고 수동작동으로 자연통풍이 가능함

- 내부쪽에 크립프망 설치되어 유리창 보호 및 보안사고를 방지함

- 외부에서 미관상 거부감 없고 일반 격자창호 형태임.

○ 수용실 화장실

-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며 도기계 소변기, 대변기, 세면기 설치되어 있음.

○ 수용실내 통신수단

- 중앙통제실과 각사동별로 인터폰으로 통신
- 직원 개인무전기휴대 수시 통신

○ 접견실

- 수용자 접견실은 개방형으로 단체접견 운영
- 식탁과 의자가 설치되고 차단시설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접견 가능 (남·여구분 없음)
- 토요일, 일요일에만 접견이 허용되며 1회 약 90명정도 동시접견
- 접견담당 양쪽 1명씩 2명 근무 (대화내용 기재안함)

○ 식 당

-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수용자 식당이 있으며 현재 1,600명 식사를 사동별 교대로 하고 있음
- 각 사동에서 게호자 없이 식당까지 자유롭게 이동
- 주방은 식기세척기 등 현대화된 시설임
- 식당에는 민간인 조리사를 고용하여 요리를 전담시키고 있으며 수행자는 (관용부) 배식 등 잡무만 처리

○ 교 육

- 교실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복도 및 공장엔 환

기용 닥트가 설치되어 있음

- 고등학교 과정과 의무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킴
- 건축, 목공·배관, TV·비디오조립의 실습장이 있고 각 교실에 과정별 1명의 교사가 있음.
- 교육장 입구에 교도관 근무하면서 출·입 통제(직원1명, 감독자1명)
- 3개동의 교육장이 있음(1개동에 15개 교실이 있음)

○ 기 타

- 에너지 절약시설(중수도, 태양열설비)이 없고 상수도 사용
- 각시설 벽체 등에 유리브릭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창호에도 망입유리를 설치함.

3. 특 일

가. 쾰른(Köln) 교도소 방문

- 방문일시 : 1997. 3. 17. 10:30
- 대 담 자 : Krüger 소장 및 간부

(1) 일반 행정사항

○ 개 요

쾰른(Köln) 교도소는 쾰른 시내에서 북부로 약 7km 지점(차량으로 약 30분거리)에 있으며 1987년에 신축된 독일에서 두번째로 큰 모범교도소로 경비등급(최질)에 따라 사동을 달리하는데 전체 면적이 178,000㎡이고 주벽길이 1,800m로 안에는 5m 높이 철망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최저 3.5m에서 최고 4.5m 높이의 콘크리트

주벽이 있었음.

○ 수용인원 및 직원정원

· 수용인원 : 정원 1,200명에 현재원 1,121명(남자 899명, 여자 222명) 직원정원 550명(보안직원 350명, 처우직원 200명)

○ 전화 및 흡연

전화도 가능하고 담배는 정해진 날자에 구입하여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음

○ 교정사고 : 도주사고 등 교정사고는 거의 없음

○ 접견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허용하고 1개월에 1회씩, 매회 1시간씩 허가 되고. 있는바 일반수형자는 접견실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었으며 직원 두사람이 계호 및 안내를 겸하고 있음. 중범수형자는 단독접견실에서 칸막이 없이 하되 계호직원이 입회하였고 유사시 비상벨을 사용함.

○ 수 용

원칙적으로 독거수용이지만 수용인원이 많아 상하로 침대가 놓여 있는 거실에 두사람씩 수용하고 있으며 사방에는 TV, 라디오, 서적 등을 자원으로 비치 활용할 수 있고 5년 이상의 장기수형자는 새를 기를수도 있었으며 특이한 것은 관용부 휴게실이 따로 설치된 점임.

○ 운 동 : 하루에 오전·오후 한시간씩 2회 운동을 시킴

○ 취사장

한 취사장에 담당직원 3~4명과 관용부 20명 정도가 배치되어 취사업무를 담당함

(2) 시설사항

○ 전 경

- 정문앞까지 일반 차량통행이 가능
- 사무실 정면은 칼라창호와 칼라후렴으로 디자인하여 일반사무실과 같은 외형임

○ 주 벽

- 외부 콘크리트 벽체로 높이 3.5m~4.5m로 설치(길이 : 1,800m)됨
- 내부는 철망구조로 그 높이는 5m임
- 외주벽과 내부경계웬스 사이로 차량통행이 가능
- 내부웬스에 전자감응장치 설치

○ 정 문

- 주벽과 함께 정문과 사무실이 붙어 있음(차량출입문 별도 설치)
- 외래자 출입시 정문에서 통제, 공동락카가 있어 출입자·접견인 휴대폰 보관후 검색대를 거쳐 내부(접견실)로 이동함

○ 건물배치

- 부지형태는 삼각형으로 일렬 병렬형으로 배치(우리나라 시설과 유사함)
- 외부 주벽주변에 단독주택형 관사 설치

○ 수용동 시건장치

- 철제 철판문으로 수동식 매입형 Key박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음

○ 수용거실 출입문

- 철제 철판문으로 견고한 수동키 박스 설치
- 사동내 복도에서는 수용자가 자유롭게 활동
- 거실내의 인터컴을 통하여 직원과 통화후 개·폐
- 배식구 없고 출입문은 열어 배식함

○ 수용실 냉·난방시설

- 수용동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여 난방함(환기장치만 되어 있음)
- 복도 및 주복도에도 방열기 설치되어 있음
- 중범자 사동 출입문 앞에 CCTV설치하여 출·입자 확인

○ 수용실 창문

- 철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 복층 유리창호도 개폐 가능

○ 수용실 화장실

- 도기류 양변기, 세면기는 칸막이 없이 설치되어 있음

○ 수용실내 통신수단

- 거실내부에 인터컴이 설치되어 있음

○ 감시대

- 주벽모서리 및 중간에 삼각형 감시대 설치

○ 접견실

- 접견 접수표는 정문앞에 설치된 기계에서 자동으로 번호표가 부여됨
- 공동접견실 2개소
 - 8개탁자에서 각자 접견(직원 2명 근무)

正76254
(1997.6)

＊ 矯正資料 ＊

歐美先進矯正制度紹介(下)

-스웨덴·프랑스를 중심으로-

金 龍 俊
(法務部 矯正課 矯正官)

〈目 次〉

I. 視察者	V. 概 觀
II. 視察對象國	VI. 視察國別 施設紹介
III. 視察期間	VII. 맺는말
IV. 視察目的 및 視察內容 作成方法	

編輯者 註) 본 자료는 교정공무원들이 선진교정제도 및 교정시설을 시찰, 우리나라와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등을 비교·연구하여 교정시설 조성계획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시찰자들의 시찰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함.

- 경범인 경우 사복착용하고 접견(접견시 외래인과 수용자의 구분이 안됨)
- 접견실 음식은 내부에서 구매, 외부반입 금지
- 증범자 접견시 직원이 입회하고(증범자 별도 관리) 직원 책상앞에 비상벨 설치
- 접견은 주말에는 불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허가

○ 식 당

- 주방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음
- 식사는 E/V로 운반하여 수용실내에서 식사함

○ 교 육

- 목공작업장이 있음.

○ 기 타

- 태양열 등 중수도시설 없고, 상수도 사용함.

○ 직원담당실 및 게시판 비치

사동마다 문입구에 3~4명 규모의 직원담당실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담당용 개인옷장이 있는 등 일반사무실과 같고 사방은 시찰구가 없으며 담당대앞에 각종 정보(교도소 생활안내)를 알릴 수 있는 대형게시판이 있음.

(다음 6월호에 이어짐)

VI. 觀察國別 施設紹介

4. 스웨덴(Sweden)

가. 킬베르야개방교도소(TILLVERGA)방문

○ 방문일시 : 1997. 3. 19. 10:00

○ 면담자 : Susanna(여) 부소장 및 간부

(1) 일반행정사항

○ 개요

킬베르야교도소는 스톡홀름시에서 남부로 약 110km 지점에 위치하여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시설로 1973년에 설립되어 현재 24년이 경과되었고, 정문은 교도소와 같은 기분이 전혀 안들고 시설역시 A.B.C 3개 사동으로 구분하여 수형자를 분류수용하고 있으며 사동역시 일반기업체나 학교동의 건물과 비슷하며 비록 수형자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은 1인1실의 독거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사동별로 수형자들끼리 한 곳에 모일수 있는 친교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영어, 독어, 불어 등 주요국가의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것이 특징임.

○ 시설의 성격 및 특징

이 시설은 공장형의 개방교도소로 타교도소의 수형자가 신청서를 보내면 그 서류를 검토한 후 개방처우에 합당한 수용자만을 선발, 소장의 허가로 입소가 허가되며 사복을 착용하여 일반 사회생활과 별차이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음.

○ 수용인원 및 직원

- 수용인원 : 177명

- 직원 : 55명

○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킬베르야 교도작업은 목조조립식 주택작업을 주로하고, 선반가공작업을 하며, 제품은 중간회사를 통해 시장에 판매함. 조립식 주택은 별장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이 단점이라고 하는바 불황기에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치중한다고 함.

임금은 당초에는 사회노동시장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사회 임금의 1/3정도이며, 다른 교도소 임금이 시간당 약 8크로나(1크로나는 1백 25원정도)인데 반해 여기서는 23크로나로서 3배정도 높은 수준임. 숙련공의 임금은 25크로나까지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당 16크로나 정도를 지급함. 임금의 용도는 그 일부를 영치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 대한 변상, 가족송금, 그룹활동비, 생활용품구매비 등으로 쓰고 있음.

○ 레저시설

체력단련실, 당구대, 탁구대 등 실내체육시설과 축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운동장이 있어 시간표에 따라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

○ 목욕

목욕스케줄에 따라 수용사동 별로 목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12월초부터 1월중순까지 밤이 계속됨으로 일사

량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목욕시 유료로 적외선을 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함.

○ 교 육

스웨덴 국어외에 영어, 서반아어, 독일어, 불어 등의 교육을 시키는 외에 자신이 정규학교 취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학도 허가되는 바 이때 소요되는 수업료 등은 국고에서 부담.

○ 거 실

스웨덴에서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침대를 이용한 독거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10개 거실별 샤워장 1, 부엌 1, 화장실 2개씩이 딸려 있고 여기서 간식을 해 먹는 등 공공 취식에 활용하고 있음.

정규식사는 대형식당 2곳에서 사동별로 취식함.

○ 일과 및 직원근무

아침 일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15에 기상하여 07:15에 일과가 시작되며 폐방은 21:30에, 취침은 23:00에 하며 직원은 간편한 사복을 입고 근무하고 한 교도소에서 10년이상 장기근무하는 것이 특징임.

○ 접 건

접건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허가되며 자기 방에서 입회직원 없이 6시간동안 허용되고 접건시 구내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음.

○ 귀 휴

귀휴는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주에 1회 72시간 허가하며 목요일 오후에 출발해 일요일 오후에 복

귀함.

○ 수용자의 죄명별 현황

수용자의 범죄는 주로 경제범죄, 약물범죄, 폭행범죄, 성범죄등이며 이중에서도 성범죄를 가장 중시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일주일에 세번 심리학자에 의한 상담을 실시함.

○ 신입자 교육

신입수용자를 위하여 2주간의 입소자훈련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내용은 수용자 준수사항, 생활경제, 직업훈련의 기초, 보건 및 식생활교육,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도 교육내용에 포함됨.

(2) 시설사항

○ 전 경

- 벽돌조적조 1층으로 지붕은 박공 형태로서 우리나라 교도소 외형과는 전혀 다르고 사회건물 형태와 같음
- 웬스설치로 인하여 내부투시가 가능하고 시설물의 형태와 색상이 일반시설물과 동일함.

○ 건물배치 : 단층형 병렬형태로 자유롭게 배치

○ 주 벽

- 외부경계웬스가 있고 그 높이는 3m에 불과함.
- 콘크리트 주벽은 없으나 CCTV카메라로 감시할 수 있음.

○ 정 문

- 펜스로 된 주벽과 연결된 투시형 철문으로 통제실 근무직원이 CCTV확인후 자동개폐함.
- 민원인(외래인)도 CCTV로 확인한 후 자동 개폐되고 청사 내부에 위치한 접수실로 자유롭게 들어옴.

○ 수용동

- 1개 사동 공동구역에 수용실 10실당(1인 1실) 공동부엌 1개소, 샤워장 1개소, 2개의 화장실이 있음.
- 수용자 식당이 별도로 2개소가 있고 후생시설로서 체육관, 사우나, 헬스장, 당구장 등이 있음.
- 공중전화는 수용자가 소지한 동전을 투입, 자유롭게 사용

○ 수용실

- 목재 침대와 개인사물함이 있고 TV도 시청할 수 있음.
- 창문에 커튼도 설치

○ 수용거실 출입문

- 견고한 목재출입문으로 매입형 수동키박스 설치
- 시찰구도 없이 전혀 내부를 관찰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고

- 수용자 개인이 자기 키를 소지하고 있으며

- 직원은 마스터키로 개·폐가능

○ 수용실 난방시설

- 강판방열기에 의한 난방시설 설치, 냉방시설은 없으며 탁트에 의한 환기 가능
- 자동감지기에의 실내온도 조절 가능

○ 수용실 창문

- 차단시설 없고 일반 복층 유리창임.
- 창문에 수용자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커튼설치

○ 접견실

- 별도의 접견실은 없고 자기방에서 자유롭게 6시간동안 접견 실시

나. 쿨나(Kumla)교도소

○ 방문일시 : 1997. 3. 19. 11:30

○ 면담자 : 닐슨(Bo NILSSON)소장 및 간부

(1) 일반행정사항

○ 개요

쿨나(Kumla)교도소는 스톡홀름 남쪽 19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으로 2시간 30분거리에 있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중구급 교도소임.

이 교도소는 3개동으로 구분하여 한동에 60명씩으로 구분 수용하며 밖에는 7m 높이의 콘크리트 주벽이 있고 주벽에서 10m 간격으로 안쪽에 철망으로 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 펜스는 만지기만 하면 경보장치가 울리고 펜스와 주벽사이의 활동상황은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통제실에서 감지되어 도주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건물 지하에는 각 사동 및 공장 등과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있어 직원 및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지금까지 32년동안 단 25명이 도주하였고 도주에 사용한 도구와 압수한 마약도구 등 부정물품을

한곳에 전시하고 있음.

- 수용인원 : 300명으로 현재인원 200명 수용
- 직 원 : 250명(계호직원 180명, 처우직원 70명)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공장은 목공장, 기계공장, 도금공장 등이 있는데 이곳의 교도작업 생산품은 철제 옷장, 신발끈 등이며, 직업훈련도 이에 맞추어 실시하는데 시설 중간 중간에 직업훈련소를 두고 있음.

- 징 벌

징벌의 종류는 경고, 금치, 형기 연장이 있고 징벌자는 징벌자 사동에 수용하고 일반수용거실은 시찰구가 없지만 징벌사동의 거실은 시찰구가 있으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는 방음장치가 설치된 특수거실의 침대에 눕혀 양발과 양손을 시감함.

- 의료·처우

내과, 외과, 치과 등 기본적인 진료는 상임 전문의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파트타임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시설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는 외부진료도 가능함.

- 수용자 거실 및 옷색깔

거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거실에는 침대, 옷장, 책상, 의자2개, TV, 책꽂이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미결은 사복을 착용하고 기결은 초록색 관복을 착용함.

- 전 화

중구금교도소로 전화는 자유롭지 못하며 통화를 원하는

수용자가 전화기를 들고 교도관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수화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연결해 줌. 교도소측은 수용자의 가족명단과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통화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내용을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주지시키고 있음. 다만 징벌자는 통화가 제한됨.

- 면 회

소내에는 모두 5개의 면회실이 있는데 3개는 3명정도가 입실할 수 있고, 2개는 5~6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임. 면회신청은 전화로 하고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주에 한번씩 1회에 2시간정도 면회가 허용됨.

- 운 동

작업에 취업중인 자를 제외하고, 운동은 하루에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2시간씩 축구등 구기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운동이 불가능한 노약자는 구내 산책이 허용됨.

- 보안관리

중앙통제실과 관구통제실을 통하여 재소자 동정감시, 외곽경계 및 각종 문의 개폐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특이한 점은 중앙통제실에 배치개소가 셋이 있는데, 근무자 셋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있음.

- 여가활동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용자용 휴게실이 있어 여기서 커피나 차도 마시고 심지어 카드놀이까지도 할 수 있으

며 탁구장, 체력단련실, 농구장, 테니스장도 마련되어 있음.

(2) 시설사항

○ 전 경

- 주변도로에서 곧장 진입할 수 있으며 사무동 전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를 관망할 수 있음.
- 수용동 부분은 콘크리트 주벽으로 구획되어 있음.
- 교도소인근에 마을이 산재되어 있음.

○ 건물배치

- 수용용도별로 주벽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였음.
 - 특별수용동, 일반수용동, 공장동별로 콘크리트 주벽에 의한 구획
- 일반병렬형으로 ㄷ자형, ㄱ자형으로 배치됨.

○ 주 벽

- 외부는 펜스로 낮게 경계하고 가운데는 콘크리트 주벽(7M)을 설치하였으며 내부에는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보안에 철저를 가하고 있음(3중 경계망 설치)
- 주벽형태는 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파형을 두어 구조를 보강하고 상부는 안쪽으로 동그랗게 굽어있음(반원형으로 월담방지)
- 내부펜스에 센서장치가 있으며 바람에 의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풍압측정기를 설치하여 확인하고 있음.
- 각 지역에 모니터 카메라가 설치되어 감진장치에 의

해 자동으로 문제점을 집중확인할수 있음(유사시 중앙통제실에서 수동조작도 가능).

○ 정 문

- 펜스로된 주벽에 함께 설치되어 있고 외부인 또는 직원출입시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의하여 입출입이 통제됨(차량진입도 동일함, 출입문 별도 설치).

○ 수용동

- 일반수용동 3개동이 병렬로 배치되어 1동당 61명 수용
- 징벌방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누운상태로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침대 확보
- 특수수용동은 1동에 12명씩 60명 수용

○ 시건장치

- 직원 키로 개·폐할수 있고(수동) 아주 견고히 설치되어 있음.

○ 수용실

- 징벌방 : 일반수용실과 동일하나 변기·세면기 등은 스텐레스 제품임.
- 출입문 : 철제로 견고히 설치되어 있음.
- 개인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수용자는 TV시청이 가능하며 침대가 비치됨.

○ 수용실 냉·난방

- 강판방열판에 의한 난방 가능
- 냉방시설은 없고 환기장치만 설치됨.

- 수용실 창문
 - 철격자 및 감지열선 창호, 알미늄 격자창호 등 수용구분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설치됨.
- 수용실 화장실
 - 도기제 세면기, 양변기 설치되어 있음.
 - 정벌방엔 스텐레스 변기가 설치됨.
- 통신수단
 - 인터컴이 있어 필요시에 직원과 연락가능하고 복도에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됨
- 병사동
 - 치과, 기타 진료시설이 일반사회와 비슷하게 시설되어 있음.
- 공 장
 - 목공가구 제작, 철제옷장 제작, 조립포장
 - 신발판 제작이 주요생산품임
 - 교육시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음
- 접견실
 - 1인용 접견실에서 실시
 - 부부접견실에는 침대도 비치되어 있음
- 기 타
 - 상수도 사용
 - 지역 중앙공급식 난방으로 보일러 시설 불비
 - 하수는 지역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쓰레기는 수거 후 지역난방에 활용

5. 프랑스

가. 법무부 교정국

- 방문일시 : 1997. 3. 21. 10:30
- 면담자 : 법무부 교정국 국제담당관
후벌트 피엘레 보날디(Hubert-Pierre Bonaldi)
및 직원 2명

○ 개 요

프랑스 교정국에서는 최근에 국제담당관제를 별도로 신설·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관계가 빈번해지고 5년전부터 교정의 민영화작업(식당, 직업교육, 의료, 취업알선, 교도작업 등에 민간기업이 참여함)이 개시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창설하였다고 함.

이와같이 교정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는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운영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앞으로 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이러한 민간인의 참여는 주로 다년간 교정현장에서 근무한 간부교도관 출신으로 구성되고 있음.

○ 조 직

프랑스에는 중앙조직으로 법무부장관 밑에 차관, 교정국장, 부국장이 있으며 2개 감독관과 4개부가 있고 10개의 지방교정청과 183개의 지방교정시설이 있으며 구치소 118개, 구치지소 23개, 교도소 41개(개방교도소 11개 포함) 교정병원 1개소로 구성됨.

○ 수 용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전국의 총수용실은

49,330개이고 4,000개 거실을 증설하고 있는 중임

- 수용인원은 총 58,000여명에 기결 36,000명, 미결 22,000명이며 이중 외국인이 6,000명임.

○ 교정시설 분류

프랑스에서는 교정시설을 형기 1년이하자와 기·미결 혼합수용 교정시설, 1년이상 5년이하 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 5년이상을 수용하는 교정시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100~200명 수용하며 강력범이나 교정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 등을 선별하여 수용하고 있음.

○ 가석방

가석방은 판사가 허가하나 장기수형자중 일부를 극히 제한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도 장관이 허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

○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수형자의 선행정도에 따라 형기를 단축해 주는 선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정은 판사가 하고 있음

○ 사설교도소

현재 프랑스에 사설교도소는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교정시설운영에 있어서 음식물 조리제공, 교육, 청소, 의료 수송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사기업이 참여하다보니 이윤추구 문제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정사고

'96년말 한 교정시설(띠송)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급식불량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테러리스트 등에 의해 주도되었고 14명의 직원이 인질로 잡혔으나 결국 협상에 의하여 해결됨.

나. 쉐쌍드니(Seine-Saint Denis)구치소 방문

○ 방문일시 : 1997. 3. 21. 14:30

○ 면담자 : 행정소장 - 올리비아(Oliver)

민간관리소장 - 다니엘오디팍스(Daniel Audifax)외 간부직원 6명

(1) 일반행정사항

○ 개요

쉐쌍드니구치소는 파리 도심지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고 1991년에 신축된 프랑스의 최신식 건물로 민간입자가 식당, 의료, 수형자 이송등 여러부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결 및 형기 1년미만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구금 시설임.

○ 출입문은 정문 한곳 뿐으로 정문출입시 검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헬리콥터에 의한 수용자 탈출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철선으로된 착륙지망이 설치됨

○ 시찰 및 열쇠관리

- 수용사동은 2~4층으로 기·미결 또는 출역 관구별로 십자형으로 건축되었고 감시대는 대각선으로 2곳에 설치됨.
- 중앙 및 관구통제실에서 모든 정문 및 통용문을 전자식으로 고 개·폐를 조정하고 거실출입문 시건장치는 수동식 열쇠식이고 거실문에는 직경 5cm 정도의 작은 구멍에 의한 시찰이 가능함.

○ 수용자 및 직원

- 수용인원 : 720명
 - 직원 : 238명(민간업자 교정참여로)
 - 교도관 : 168명
 - 처우직원 : 30명
 - 사기업 직원 : 40명

○ 거실수용 처우

독거수용원칙(독거실 9㎡)이나 수용밀도상 2인을 수용(2인수용실 14㎡)하고 있으며 각 거실에는 자기부담으로 차용한 TV와 카세트, 그리고 관에서 지급한 책장, 거울 등을 비치하고 판사가 격리수용을 요구한자, 조직폭력의 두목, 강간범, 어린이 유괴범 등을 별도 격리수용 하고 있음

○ 두발 및 흡연

두발 및 흡연은 자유로이 허용하고 휴게실에서 카드놀이도 할 수 있으며 전화사용은 구치소에서는 불가능하나 교도소에서는 가능

○ 교정사고

교정사고는 대형 폭동사고외에 도주사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수용자의 자살이나 자해사고에 대하여는 직원의 책임이 없음

- '97년 2월 외부병원에 나간 수용자가 도주한 사실이 있는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가는 날짜를 미리알고 사회에 있는 동료의 지원을 받아 도주했다고 함.

○ 교육

기·미결 구별없이 누구나 신청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수형자에게는 일정한 보수도 지급하고 특히 16세이하 소년수형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접견

접견은 미결은 주 3회, 기결은 주 1회, 입회자 없이 실시되고 접견시간은 30분임.

○ 의료 입문

입소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수용자 개인별로 건강카드를 만들어 비치하고 의무과에는 전문의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이 있어 질병에 이환된 수용자는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 환자중에는 에이즈 환자가 2.5%나 된다고 함.

(2) 시설사항

○ 전 경

-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단독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음.

- 주벽에 격자 문양을 넣음으로써 교정시설 특유의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 건물배치
 - 부지형태에 맞추어 시설배치를 하였음.
 - 수용동 형태는 정십자(+)형으로 4개동이 주벽내에 연결설치 되어 있음.
- 주 벽
 - 콘크리트로 된 외주벽은 높이 7m, 내부에 설치된 경계웬스는 높이 3.5m임.
 - 철근콘크리트로 노출마감하고 외부벽체에 벽돌형 타일로 문양을 넣어 미관을 고려함.
 - 외부에 경계없고 주벽내부 웬스에 전자감응장치와 CCTV 설치하여 보안사고 예방 철저
 - 주벽에 감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4면감시(1개소 7명/1일 교대)
 - 주벽상부를 원형으로 마감함으로써 도주사고 예방에 용이
 - 주벽 주변바닥에도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60kg이상 무게가 실릴 때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효과없이 폐지)
- 정 문
 - 주벽이 연결된 채로 설치되고, 정문을 통과 바로 청사동과 연결됨.
 - 구내 진입시 정문에서 확인점검후 출입
- 수용동
 - 건물형태가 십자(+)형으로 4개동이 배치되어 있음.

- 십자(+)형 중앙부분에 직원근무실을 설치하여 4면을 동시에 관리함(벽측, CCTV활용)
- 수용동 시건장치
 - 철제 철판문으로 견고한 매입형 Key박스가 설치되어 있음.
- 수용거실 출입문
 - 철제 철판문으로 견고히 설치되어 있음.
 - 배식구 없고 출입문을 열어 배식함.
 - 모든 출입문 개폐시간 중앙통제실에서 모두 통제 기록 관리
- 수용실 냉·난방시설
 - 수용동내에 방열기 설치하여 난방
 - 환기용 닥트설치
- 수용실 창문
 - 철격자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 복층유리로 마감
- 감시대
 - 8각형으로 되었으며 외부에 창호가 설치됨.
 - 주벽 모서리 2곳에 설치
 - 1개 감시대는 가시거리 한계가 180m이므로 2개 감시대에서 전시설의 감시가 가능함.
- 접견실
 - 공동접견실 1개와 단독접견실이 여러개 있음.
 - 단독접견실은 수용자와 접견자 사이 칸막이가 없고 카운터형 책상만 있으며 신체접촉도 가능
 - 중범죄자 단독접견실에는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

어 대화만 가능함.

○ 공 장

- 목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중앙통제실

- 교도소내 출입문 개폐시 모두 전산 기록
- 유사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비상연락할 수 있는 직통전화 설치
- 교도소내 취약지구 및 주벽주위에 CCTV를 설치하고 전자감응장치로 유사시 즉각 대응

○ 기 타

- 기동과 그 상부에 철망으로 연결하여 헬리콥터를 이용한 탈주를 예방하는 시설이 있음.
- 병동은 없고 진료시설만 설치하고 있으며 장기치료자는 외부로 이송 치료함.
- 수용동 출입문 시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1983년 이후 수용자 자살에 대하여는 전혀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음.
- 상수도만 사용하며 하수는 지역종말처리장에서 처리
- Gas를 이용한 중앙공급 난방 사용
- 새로운 교정시설 신축시 부지확보가 어려워 공모후 참가 지역의 심사완료후 선정

Ⅶ. 맺는말

- 이상과 같이 여주교정시설 조성 해외자료 조사를 위한

미국 등 선진 5개국 교정시설을 방문하고 방문국 순서에 따라 크게 일반교정행정사항과 시설 사항으로 나누어, 우선 출장중에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하여 보고하며 보다 구체적인 교정행정 사항과 신축하려는 새로운 교정시설에 대한 도면(안)은 추후 보내주기로 약속한 구체적인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보고하겠음.

- 선진외국의 교정시설의 기본구조를 우리 교정시설에 도입 반영키 위해서는 수용자 관리체계가 상호 어느정도까지 유사·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 선진외국의 시설내 수용자처우는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폐쇄적 체제하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교정시설에 있어서는 그들 시설의 기본구조를 도입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창호, 철망, 출입문 개폐장치, 중앙통제실 감시장치 등 시설내부의 세부적인 면에서는 기술적·기능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면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진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여주교정시설을 비롯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개선모델을 입안·제시하겠음.

英國行刑法紹介(上)

李 正 揆

(法務部 矯正課 矯正監)

〈目 次〉

第1章 受刑者	8. 特別統制 및 戒具使用
1. 總則	9. 規律違反
2. 宗教	10. 其他 特殊한 收容階層
3. 醫療 等	11. 死刑囚의 處遇
4. 厚生 및 作業	第2章 矯正官
5. 教育 및 福祉	第3章 矯正所 來訪者
6. 書信 및 接見	第4章 矯正所 訪問者 委員會
7. 移送, 記錄, 所有物	第5章 捕則

第 1 章 受刑者

1. 總 則

제1조(교도소내의 처우와 훈련의 목적) 수형자의 처우와 훈

*註) 英國行刑法은 1952년 이후 英國各矯正施設에서 施行되어오다 1964. 3. 25 全面改正하였고 그後 6次에 걸쳐 部分改正하였으며, 最近에 修正補完 改正한 內容을 우리나라 行刑法과 比較·參考하기 위하여 翻譯·掲載함.

련의 목적은 수형자가 유용하고 선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규율과 질서유지) (1) 규율과 질서는 안전한 구금과
질서정연한 공동생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유지되어
야 한다.

(2) 수형자를 통제함에 있어서 직원들은 자신들의 모범생활
과 지도력을 통하여 수형자들에게 감화를 주므로써 자발적인
협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재소자들의 처우는 항상 그들의 개인적 자존심과 책임의
식을 고양시키는것 이어야 한다. 그러나 규율을 유지하는데 재
소자가 고용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수형자의 분류) (1) 재소자는 내무부장관의 훈령에 따
라 그들의 연령, 성향 및 사건 기록을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조
장과 선행유지를 위해 분류수용 되어야하며 수형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우와 교육훈련의
목적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미결 재소자는 기결 재소자와 가능한한 접촉을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 수용되어야 한다.

(3) 이법의 어떤 규정도 재소자에게 다른사람과 교제하지 못
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특전) 교도소에는 수형자들의 계급에 적합한 특전제도
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그 제도에는 재
소자에 의한 수입은 교도소내에서 재소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형기의 삭감) (1) 실 복역기간이 1개월이상의 구금형
을 받은 재소자는 그의 선행과 근면성에 따라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실 복역기간이 31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감경을 허가해서는 안되며, 감찰조건부로
석방되었다가 교도소에 재입소된 재소자의 경우(본 조항(2) b
에 해당되는 재소자는 제외)에는 교도소에 다시 들어온후 30일
이 경과 되기 전에는 석방을 허가할 수 없다.

(2) 이 법에 의해 허가된 형의 감경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 형사사법법 1967. 제67조(구금형기간 계산과 관련)에 의
하여 산정된 일정 기간과 실복역기간 전체의 1/3.

b. 형기 경과후 형기 연장 지휘서가 발부된 재소자의 경우
와 감찰 조건부 석방으로 석방되었다가 교도소에 재수용
된 재소자의 경우, 재수용시 잔형기의 1/3.

(3) 이법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a. 형사사법법 1982 제9조에 의거한 구치명령이나 청소년
구금형, 구치센타 명령에 의한 교도소수용, 유죄판결로
벌금납부선고를 받고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재
소자는 징역형을 복역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처우 되어야
한다.

b. 여러 형이 연속되는 구금기간은 하나의 형기로 처우해야
한다.

(4) 이 조항은 형기삭감 상실의 징벌 처분에 효력을 가지며

무기형을 복역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A) 행형법 1952에 규정한 다른시설(교도소 이외)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재소자의 경우와 다른 시설과 관련하여 동법 제 47조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부과된 것과 같은 효력이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징벌 처분이 이 법에 의거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거, 효력을 갖는다.

(5) 이법에서,

- a. “실 복역기간”이란 형사사법법 1967. 제67조에 의하여 감경된 구금기간을 의미한다.
- b. “형기 삭감의 상실”이란 1968. 4. 1 이전에 이루어진 그와 같은 징벌처분에 있어서는 감찰조건부 석방을 받을 자격의 연기를 포함한다.
- c. 교도소에 재입소되는 자에 대한 지휘서류는 법원에 의한 감찰조건부 석방의 취소에 대한 지휘서류를 포함한다.
- d. 전항에 언급한 제67조에 대한 인용은 1967. 10. 1 이전에 끝난 형의 경우에 C.J Admin Act 1962(a)의 제17조(2)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일시석방)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재소자는 일정 기간동안 일정조건을 부여하여 일시석방될 수 있다.

(2) 재소자는 이 법에 의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석방될 수 있고 또 취업, 학습, 훈련 기타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일시석방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라 일시석방된 재소자는 석방조건 위반 사실의 유·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교도소에 소환될 수 있다.

(4) 이 법은 재판을 받기위해 구금된자, 형의 선고를 위해 구금된자, 순회재판관에 의해 재판을 받기위해 구금된 자, 법원에 의해 구금된 자를 제외한 수용자에게 적용된다.

제7조(재소자에 대한 고지사항) (1) 모든 재소자에게는 입소 후 빠른 기간내에,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 법과 기타 작업수입, 특전, 고충 및 불복사항의 토로방법, 내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 18세이하의 재소자와 18세 또는 그 이상의 자라 하더라도 글을 읽지 못하거나 고지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재소자에게는 소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교도관이 재소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3) 이 법 사본은 이 법을 요구하는 재소자는 누구에게라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8조(면담신청) (1) 재소자가 소장 또는 내무부 방문관, 방문자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접수한 교도관은 이를 기록하여 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소장은 면담을 신청한 재소자의 면담 사항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재소자가 소장이외의 자에 대한 면담을 원할 경우 소장은 그 면담 자가 다음 교도소를 방문할때 면담 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여자재소자) (1) 여자재소자는 남자와 완전히 분리 수 용되어야 한다.

(2) 삭 제

(3) 내무부장관은 적절한 조건을 불허 여자재소자가 교도소 에 유아를 대동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고 유아양육에 필요 한 모든 것이 제공될 수 있다.

2. 宗教

제10조(종파) 재소자는 행정법 1952. 제10조(5)에 의거 제정 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종파에 따라 채우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장은 적절한 경우에 또는 타당한 조사를 한후 그 규정을 개 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교회사 및 교도소 목사의 임무) (1) 교도소의 교회사 또는 목사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재소자의 입소 즉시 또는 출소 직전 개별적으로 그들의 종파에 속한 재소자에게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b. 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의 장례식에는 달리 준비가 되 어있지 않은 경우 조사를 낭독해야 한다.

(2) 교회사는 영국교회에 속해 있는 재소자중 환자, 시감자 및 독거 수용자를 매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교도소 목사는 가능한한 자신의 종파에 속한 재소자를 위하여 앞에 언급한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교회사는 영국교회에 속해있지 않는 환자, 시감자, 독거 수용자 또는 자신이 속한 종파교회 목사가 교도소를 방문하지

않는 재소자의 경우 그가 원한다면 면담을 해야한다.

제12조(목사의 정기방문) (1) 교회사는 영국교회에 속해있는 재소자를 정기적으로 면담해야 한다.

(2) 교도소목사는 가능한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종파에 속한 재소자를 면담해야한다.

(3) 재소자가 교도소 목사가 임명되어 있지 않은 종파에 속 해 있을 경우 소장은 그 재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가 속한 종파의 목사가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종교의식) (1) 교회사는 매주일 1회이상 또는 성탄 절, 성금요일에 영국교회에 속한 재소자를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스러운 행사나 주일에배는 계획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2) 교도소 목사는 자신의 종파에 속한 재소자를 위한 예배 의식을 일정한 기일에 거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교회사 및 교도소 목사 대행자) (1)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교회사의 부재중 그를 대행할 수 있다.

(2) 교회사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부재중에 그 를 대행할 수 있는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일요일 작업) 기독교를 신봉하는 재소자에게는 일요 일, 성탄절 또는 성금요일에 불필요한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